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철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844

발의연월일: 2021. 2. 2.

발 의 자:이철규·최승재·김선교

윤창현 · 김정재 · 이주환

엄태영 · 한무경 · 권명호

구자근 · 정운천 · 백종헌

이양수 · 강훈식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광해방지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경력관리는 다양한 법령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광해기술인력에 대한 정보파악이 어렵고, 광해 기술인력의 자격·경력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.

따라서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및 광해방지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·활용함과 더불어 이들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한 경우 그실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, 광해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근무처·경력·학력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 및 광해기술인의 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관리제도와 광해기술인 인정제도를 신설하고, 이와 관련된 일부 업무를 관련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전문광해방지사업자와 광해방지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 력을 체계적으로 육성·관리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8호, 제13조의2, 제1 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및 제46조제2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8. "광해기술인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서 제18조의2에 따라 광해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라 광해방지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 한 사람
 - 나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과 광해 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3조의2(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 신고 등) ① 전문광해방지사업 자는 제1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한 경우 그 실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.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,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게 광해방지사업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에 관한 기록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·관리하여야 하며, 그 기록이 필요한 자가

신청할 경우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에 관한 증명서(이하 "실적증명서"라 한다)를 발급하여야 한다.

- ③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광해방지사업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의 신고, 실적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

제15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제3장에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제18조의2(광해기술인의 인정) ① 광해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2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해기술인으로 인정한 후 광해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(이하 "경력증명서"라 한다)를 해당 광해기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제2항에 따른 광해기술인의 등급 등경력증명서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한다.
- 제18조의3(경력증명서의 대여금지 등) ① 광해기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증명 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다.

-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력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.
-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8조의4(광해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해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해기술인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광해기술인으로 인정받은 경우
 - 2.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(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광해기술인에 한정한다)
 - 3.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경 우(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광해기술인에 한정한다)
 - 4. 광해기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 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증명서를 빌려준 경우

제45조 중 "임·직원은 「형법」 그 밖의 법률에 의한"을 "임·직원과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·단체의 임·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「형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"으로 한다.

제46조 중 "대통령령이"를 "대통령령으로"로 하여 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적증명서 발급, 광해기술인의 인정 신청,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과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48조 중 "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시설을 사용한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증명서를 빌려준 광해기술인
- 2.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 지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력증명서를 빌린 자
- 3.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
- 4. 제28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시설을 사용한 자

제49조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8. "광해기술인"이란 다음 각
	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	사람으로서 제18조의2에 따
	라 광해기술인으로 인정을
	받은 사람을 말한다.
	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
	라 광해방지 분야의 기술
	자격을 취득한 사람
	나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
	력과 광해 분야에 관한 경
	력을 가진 사람
<u> <신 설></u>	제13조의2(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
	실적 신고 등) ① 전문광해방
	지사업자는 제12조제2항제2호
	각 목의 사업을 수행한 경우
	그 실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
	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
	할 수 있다. 신고 사항을 변경
	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	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

제15조(등록의 취소 등) ①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광해방 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영업의

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, 제12 조제2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 사업자에게 광해방지사업을 위 탁하였을 때에는 전문광해방지 사업자의 실적에 관한 기록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·관리하여야 하 며, 그 기록이 필요한 자가 신 청할 경우에는 전문광해방지사 업자의 실적에 관한 증명서(이 하 "실적증명서"라 한다)를 발 급하여야 한다. ③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제1 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광해방지사업 실적 등을 거짓 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④ 제1<u>항 및 제2항에 따른 실</u> 적의 신고, 실적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 제15조(등록의 취소 등) ① -----

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 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 야 한다.

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4. ~ 6. (생 략) ② ~ ⑥ (생 략) <신 설>

- ~ 3. (현행과 같음)
 3의2.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
 여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
 한 때
- 4. ~ 6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- 제18조의2(광해기술인의 인정) ① 광해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2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해기 술인으로 인정한 후 광해기술 인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(이하 "경력증명서"라 한 다)를 해당 광해기술인에게 발 급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제2항에 따른 광해기술인의 등

<신 설>

<신 설>

급 등 경력증명서 발급 및 관 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한다.

제18조의3(경력증명서의 대여금 지 등) ① 광해기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 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증명서를 빌려주어 서는 아니 된다.

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력 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.

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 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 서는 아니 된다.

제18조의4(광해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해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해기술인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

법으로 광해기술인으로 인정 받은 경우

- 2.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16조 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(제2조제8호가목 에 따른 광해기술인에 한정 한다)
- 3.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16조 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경우(제2조제8호가목 에 따른 광해기술인에 한정 한다)
- 4. 광해기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 해방지사업을 수행하게 하거 나 경력증명서를 빌려준 경 우

의제) -----임·직원과 제46조 법」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 | 종사하는 법인·단체의 임·직원 은 그 업무에 관하여 「형법」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----

제46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산 제46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

제45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제45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 공단의 임·직원은 「형 원으로 본다.

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48조(벌칙) 제28조의 규정에 따 제 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 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시설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<신 설>

레트러러스그	
<u>대통령령으로</u>	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	적
증명서 발급, 광해기술인의	인
정 신청, 경력증명서의 발급	등
과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	<u>0</u>
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	법
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	
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	위
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	을
지원할 수 있다.	
48조(벌칙) <u>다음 각 호의 어</u>	느
하나에 해당하는	
,	

1.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
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증명서를 빌려준 광해기술인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49조(과태료) ① 다음 각호의 제49조(과태료) ① ------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 다.

<신 설>

2. · 3. (생략)

② (생략)

- 2.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 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거 나 다른 사람의 경력증명서 를 빌린 자
- 3.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
- 4. 제28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시설을 사용한 자

1.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

- 2. 3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